

#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

**[ 현장명: 소래초 석면텍스 철거공사 중 측정 ]**

**[ 측정일: 2020. 01. 20 ]**



**(주)하늘석면환경**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43-1 (5층) 502호  
TEL: (031)287-1009 FAX: (031)286-1006

##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
제 출 인	상호(대표자) : 예하건설	사업자등록번호 :
	주소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태기1길 25/ 1층	
건 축 물	건물명(현장명) : 소래초 석면텍스 철거공사 중 측정	위치 :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27번길 14
	연면적(㎡) : 9337.87㎡	작업기간 : 2019.12.26.~ 2020.02.02
	석면건축자재[면적(㎡)] : 3447.68㎡	
측정기관	상호(대표자) : (주)하늘석면환경	사업자등록번호 : 403- 81- 69395
	주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43- 1,5층 502호	
측정일시	2020년 01월 20일	
측정결과	붙임 참조	
측정지점 위치 (도식도)	붙임 참조	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20년 01 월 일

제출인      예하건설 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**시흥시장** 귀하
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# 1.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## <개별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	측정 여부	
작업 중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 1.5m	-	×	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 1.5m 거리 1m이내	-	×	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 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	×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 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	×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 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	×	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 1.5m	-	×	
	폐기물보관 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,2- 1,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	○	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 3m, 높이 1.2~ 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	×	

< 석면비산측정 결과 >

분석번호	20191204B		분석 일시	2020. 01. 20.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석면
	B - 1	폐기물보관지점	0.000	기준치 이하
	B - 2	폐기물보관지점	0.000	기준치 이하

- ※ 참 고
- 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
  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  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
분석 연구원 : 위경수

(주) 하 늘 석 면 환 경 

## 2. 석면비산 측정 사진대장

항목	석면비산정도측정												
측정시간	시작 : 2020년 01월 20일	종료 : 2020년 01월 20일	통보 : 2020년 01월 21일										
투입장비	종류 : 지역시료채취펌프		수량 : 2 대										
촬영대상	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비산 측정 모습 ※ 석면 비산 측정 시기, 시료채취 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 『석면해체,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』 참조												
구분	사진		사진설명										
폐기물 보관지점 <b>B1, B2</b>	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06 929 494 1003"> <tr> <td>공시명</td> <td>시흥소재초등학교 석면해체거점사 석면측정</td> </tr> <tr> <td>공종</td> <td>비산측정</td> </tr> <tr> <td>위치</td> <td>경기 시흥시 호현로 27번길</td> </tr> <tr> <td>내용</td> <td>토공규준통, 측정기법</td> </tr> <tr> <td>일자</td> <td>2020.01.20</td> </tr> </table>		공시명	시흥소재초등학교 석면해체거점사 석면측정	공종	비산측정	위치	경기 시흥시 호현로 27번길	내용	토공규준통, 측정기법	일자	2020.01.20	석면해체 후 포장폐기물 임시보관장소
	공시명	시흥소재초등학교 석면해체거점사 석면측정											
공종	비산측정												
위치	경기 시흥시 호현로 27번길												
내용	토공규준통, 측정기법												
일자	2020.01.20												
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: 석면해체 작업구역 / 2개소 분석결과(기준 0.01개/cm³ 이하) : 기준치 이하		작업일 2020년 01월 20일											
구분	사진		사진설명										
구분	사진		사진설명										

별첨) 석면조사기관 지정서

제2018-120025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	주식회사하는석면환경	
소재지	(16967)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43-1 (신갈동) 동원빌딩 5층 502호(359-1번지 1층)	
대표자성명	최병문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할지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8. 12. 10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

